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관련 시공 및 관리감독 철저 협조 요청

- 1. 귀 시(도, 청, 사, 단,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 검사 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관련입니다.
- 2. 우리부에서는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강화를 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검사시 단위수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10)를 지난 9월 1일 개정 고시 하였고,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2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만,
- 3. 국정감사시 진행중인 설계용역에 대하여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는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개정을 진행중입니다. 동 지침에서 단위수량 품질검사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적용례에서 시행중인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또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의 경과조치에 따라 예외적으로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콘크리트구조물의 품질에 단위수량이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표준시방서(KCS 14 20 01) 2.3.5 배합에서 정하는 단위수량 기준 185kg/㎡ 이하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붙임의 단위수량 측정 방법에 따라 단위수량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 레미콘 단위수량 신속측정 방법(KCI-RM101 : 2022) 끝.

국토교통분장관 (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 토관리청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제주지방항공청장, 조달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강원도지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 역청장, 대전광역시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 장,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국토안전관리원장, 한국건설기술연 구원 원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단법 인 대한토목학회장,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주택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_중앙회

주무관 **백세영** 시설사무관 **양성모** 기술혁신과장 <mark>유병수</mark> 관 **이상일**

협조자 시설사무관 **김석태**

시행 기술혁신과-3983 (2022. 11. 29.)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569 팩스번호 044-201-5551 / se0123@molit.go.kr / 대국민 공개